

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
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2 월 30 일

여 수 시 장

주희경



여수시 조례 제2277호

붙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,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입장료의 감면) 조직위원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섬박람회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제13조(보상금 등)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

별표 1과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위원회가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.

[별표 1] 입장료 감경 및 면제대상자의 범위

구분 (감면 범위)	대 상 자
입장료 면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여수시 섬주민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섬주민의 범위는 [별표2]로 한다.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(독립)유공자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(1인) 5. 75세 이상인 사람 6. 6세 이하 아동 7. 단체인솔자(1인), 여행사 가이드(2인), 기사(1인) 8.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인 9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.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입장료 감경 (100분의 50 범위 내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여수시민 2.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3. 현역군경 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.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구 6. 전라남도민(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포함) 7. 자매도시 및 남해안남중권 도시 주민 8.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 입장료 면제 및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[별표 2] 여수시 섬주민 인정범위

읍면동	해당 섬	비고
화정면	월호도, 자봉도, 개도, 제도, 상화도, 하화도, 사도, 추도, 여자도, 송여자도, 낭도, 둔병도, 조발도, 적금도	
남 면	금오도, 수향도, 안도, 대부도, 대두라도, 소두라도, 나발도, 대횡간도, 소횡간도, 연도	
삼산면	거문도, 서도, 동도, 초도, 손죽도, 소거문도, 평도, 광도	
율촌면	송도, 대륙도, 소륙도	
화양면	운두도	
월호동	소경도, 야도, 대경도	
시전동	장도	
삼일동	삼간도	
돌산읍	송도, 금죽도	

* 근거 : 여수시 섬주민 등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 섬벽지 지역

▶ 여수시 섬주민 등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제1항

- “섬”이란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섬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
- “섬주민”이란 섬에 주민등록을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
- 섬발전촉진법 제2조(정의) 제1항에서 “섬”이란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기념품 등 제공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12조 ~ 제14조 (생략)</p>	<p>제11조(기념품 등 제공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,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입장료의 감면) 조직위원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섬박람회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보상금 등)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14조 ~ 제16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</p>